

보도시점 (전 매체) 8.29.(목) 11:00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개선 추진

- 중기부·고용부 협업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일괄 처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29일(목)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간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보험료 지원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주요내용)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재기지원(재취업·재창업)을 위한 기관 협업 및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등

현재는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한 경우, 별도로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와 고용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각각 신청하고 있는 이러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 신청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소진공은 현행과 같이 소상공인 여부, 보험료 납부실적 등의 지원(환급) 요건을 검토한 뒤, 보험료를 지원(환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진공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10월까지 개편하여 4분기 중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을 통해 재기 할 수 있도록 중기부-고용부 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리고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면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곧바로 해당 소상공인의 정보를 고용부 전산망(워크플러스)으로 연계되도록하여 신속하게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폴리텍 대학에 소상공인 특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기술숙련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주요내용) 전직재취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전문기술과정 지원, 전문가의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기술지도 등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소상공인의 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책임자	과 장	장상만 (044-204-7850)
		담당자	사무관	김동철 (044-204-7857)
			주무관	유경진 (044-204-7861)



**참고 1****중기부-고용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개요****1. 추진 목적**

-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재취(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2. 업무협약 개요**

- (일시) '24. 8. 29.(목), 11:00 ~ 11:30(30분)
- (참석) 차관(중기부, 고용부), 소진공 부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이사 등
- (장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 (주요내용)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개선,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한 중기부-고용부 사업 연계 강화 등

**2. 세부일정 : 인사말씀 → 협약서 서명 → 사진촬영 → 마무리 말씀**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1:00 ~ 11:30	(10') • 지역본부 현장 방문 * 체험점포, 영상스튜디오, 공유오피스 등	현장안내 : 지역본부장
	(3') • 참석자 소개 및 협약내용 설명	사회자
	(6') • 인사 말씀	고용부 → 중기부
	(3') • 협약서 서명 및 사진 촬영	①부처 → ②기관 → ③부처+기관
	(6') • 중기·고용 연계기관 발언	근복 → 소진공 → 폴리텍
	(2') • 마무리 말씀	중기부 → 고용부

## 참고 2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및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사업

###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고용부 소관)

- (목적)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 ① 6개월 연속 적자, ②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③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등
- (가입대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 보험가입(온·오프라인)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구직급여 지급)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월 109 ~ 202만원)
  - \* 보험가입기간별 지급일수: 1~3년 미만 120일 / ~5년 미만 150일 / ~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구직급여 지급 수준 >

(단위: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월)*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월)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여 (기준보수의 60%)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 '기준보수(월)'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2022.12.20.)

\*\* 보험료 : 소득과 관계없이 임의선택한 등급의 보수액(월) × 보험료율(2.25%) (월 4.1 ~ 7.6만원)

### 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중기부 소관)

- (목적)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 보험료 지원 신청(온라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go.sbiz.or.kr)
- (보험료 지원) 월별 납입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단위: 원,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고용보험료(월)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월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지원비율) : ('23) 납부보험료의 20 ~ 50% → ('24) 50 ~ 80%

\*\* (지원규모) : ('23) 50억원, 2.5만명 → ('24) 150억원, 4만명(안)

- (현행 지원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

